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42

발의연월일: 2020. 9. 7.

발 의 자:유정주·고영인·서동용

이동주・도종환・최종윤

김병욱 · 조승래 · 이상헌

신영대 · 임오경 · 박재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웹툰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을 필두로 만화산업의 진흥을 꾀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만화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및 만화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수립"을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기본계획의"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로 한다.

- 10. 만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만화진흥위원회) 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만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관련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만화가, 만화사업자, 관련 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통계의 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만화가및 만화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계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그 밖에 통계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략)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2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0.</u> 만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u>10.</u> (생 략)	<u>11.</u> (현행 제10호와 같음)
<u> <신 설></u>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
	계획에 따라 만화 창작 및 만
	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
	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
	<u>다.</u>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 <신 설></u>	제3조의2(만화진흥위원회) ① 기
	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행 등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
	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만화진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관련 전문성이 있 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이용자의 권익보호)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만화가, 만화사업자, 관련 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의2(통계의 작성) ①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제

제12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생략)

<신 설>

<신 설>

- 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필요 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 관의 장, 만화가 및 만화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 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계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그 밖에 통계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